

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3. 1. 8.(화) 14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김충식 부위원장

홍성규 상임위원

김대회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○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2012년 제70차·제7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, 2012년 제71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의결사항

가.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- (주)아로정보기술 등 10개 법인 신청 - (2013-01-001)

○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의거, 10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적격 법인 : 허가심사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6개 허가신청 법인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 법인으로 선정

- (주)아로정보기술, (주)트리포스, (주)스마트세이프존, (주)태성에스앤이, (주)디티씨, (주)아센코리아

※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고,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허가신청 법인을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

② 부적격 법인 : 4개 법인

나.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 개정에 관한 건

-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등 3건 - (2013-01-002)

○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·강화된 기업 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관련 하위고시(3건) 제·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① 「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」 전부 개정안

- (고시명칭 변경)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시 명칭을 「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·절차·수수료에 관한 지침」에서 「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」으로 변경

-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와 관련된 고시 규정을 일괄 삭제(舊 고시 제3조~제11조, 별표 2~3, 별지 제1호~제6호 삭제)

- (정보보호조치 강화)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하여야 하는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(안 별표 1)

-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, 정보보호 현황 공개, 정보보호 투자 촉진, 보안관계 운영, 중요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조치 기준 강화

※ 30개 분야(48개 세부조치사항) → 36개 분야(57개 세부조치사항)로 확대

② 「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 전부 개정안

- (인증기관 지정) 지정대상 기관의 수, 업무 범위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,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, 인증심사원 보유현황 및 업무수행 요건·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(안 제3조)
- (심사 세부기준) 인증기관 지정 심사시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요건·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심사 세부기준을 정함(안 제4조)
- (인증기관 사후관리) 인증실적 보고서, 인증기관 재지정 관련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(인증심사원 자격) 심사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자격 취득 절차, 자격 유지 및 취소 기준을 마련(안 제9조 ~ 제13조)
- (인증 의무대상자) 법령의 인증 의무대상자를 정의하고, 영세한 집적정보통신 시설 재판매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함(안 제14조)
- (인증 신청 및 계약)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한 후 인증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고,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토록 함(안 제15조 ~ 제17조)
- (인증의 기준) 기업보안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104개로 정비함(안 제18조, 별표 6)
- (인증심사 방법) 인증심사 수행시 심사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인증심사팀을 구성토록 하고, 세부 심사방법을 마련함(안 제19조, 제20조)
- (인증위원회 구성) 최초심사, 갱신심사 결과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인증위원회를 구성·운영토록 함(안 제21조, 제22조)
- (인증서 관리 및 홍보) 인증서 및 추가발급 신청서, 변경신청서 등 서식을 제정하고, 인증의 홍보를 위한 표시를 정함(안 제23조 ~ 제25조)
- (인증 수수료)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,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(안 제26조, 제27조)

③ 「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

- (사전점검 시기)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새로운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계획·설계 단계에 실시토록 권고(안 제3조)
- (사전점검 수행 우대) 사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안 제4조)
- (수행기관 지정)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을 정하고,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(안 제6조 ~ 제14조)

- (수행인력 자격요건) 수행인력은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요건을 정하고,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진흥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5조, 제16조)
- (점검기준 및 수행절차) 사전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계약→수행팀 구성→설계 검토→보호대책 적용→보호대책 구현 현황 점검·시험→점검 결과 정리·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토록 규정함(안 제17조 ~ 제24조)
- (사전점검 수수료) 사전점검 수수료는 「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」 및 「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」를 준용하되, 계약에 따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음(안 제26조)

○ 보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: 이해관계자 및 규제개혁위원회 의견

- ① 「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」 전부 개정안 : 해당 없음
- ② 「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 전부 개정안

위원회 보고안('12.7.19)	위원회 의결안('13.1.8)	비 고
<단일 인증체계> ○ 인터넷진흥원이 인증위원회 운영 및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	<복수 인증체계 마련> ○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위원회 운영 및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(안 제21조 ~ 제24조)	규제개혁위원회
<인증기관 지정요건> ○ 인증기관 지정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	<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> ○ 인증기관 지정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한 경우 가점을 부여(안 별표 2)	행정예고

③ 「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

위원회 보고안('12.7.19)	위원회 의결안('13.1.8)	비 고
<수행기관 지정요건> ○ 수행기관 지정요건으로 10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	<수행기관 지정요건 완화> ○ 수행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스템·네트워크 보안, 취약점 분석·평가 등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(안 제7조)	규제개혁위원회

○ 향후 추진 일정

- 관보 게재 및 공포 : '13. 1월

7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별도 통지키로 함

6. 폐 회 (14:45)